

# 예산총칙

2023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         | 620,380,237 | 18,611,407 |
| 일반회계                | 545,014,575 | 16,350,437 |
| 특별회계                | 75,365,662  | 2,260,970  |
| 공기업특별회계             | 36,471,148  | 1,094,134 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     | 36,471,148  | 1,094,134  |
|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   | 38,894,514  | 1,166,835  |
| 주택사업특별회계            | 3,400       | 102        |
| 의료보호특별회계            | 406,284     | 12,189    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   | 730,958     | 21,929     |
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| 504,707     | 15,141     |
|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  | 1,051,946   | 31,558    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           | 36,197,219  | 1,085,917 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[채무부담행위사업] "해당없음"

제 4 조 [계속비사업조서] "해당없음"

제 5 조 [명시이월사업조서] "해당없음"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,209,859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2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